

대법원 2021. 7. 8 선고 2021다206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21. 7. 8 선고 2021다206 판결

수원지방법원 2020. 12. 10 선고 2019나10214 판결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. 10. 24 선고 2018가소21504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 A

피고, 상고인 주식회사 B (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)

판결 선고 2021. 7. 8.

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. 12. 10. 선고 2019나10214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상고이유를 본다.

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.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상고인이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상고를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대법관 박정화, 대법관 이기택, 대법관 김선수, 주 심 대법관 노태악